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제정 : 2010. 12. 1.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2. 6. 29.
- 개정 : 2014. 11. 6.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7. 12. 28.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19. 11. 29.
- 개정 : 2020. 9. 1.
- 개정 : 2022.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수원과학대학교 학칙 제45조의 2, 제45조의 3, 제45조의 4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단위는 교원, 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되, 동문 또는 학부모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구성단위의 위원을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전체 교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단, 학생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전체 직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으로는 총학생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재학생 중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과대표)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4. 관련 전문가 위원으로는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또는 학부모 위촉 시 동문위원은 총동문화, 학부모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구성단위별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1.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원 또는 직원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학생 위원의 총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동문 또는 학부모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9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
2. 예산 및 결산
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4. 추가경정 자금예산
5. 잉여금처리
6. 등록금의 면제·감액
7.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를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개최 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함께 교내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 공고를 하고, 회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9.0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게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09.01.>

**제8조(세부사항)**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14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